

의안번호	제189호
의결 연월일	2019년 월 일 (제 회)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19년 5월 31일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89
----------	-----

제출연월일 : 2019년 5월 31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웰니스 관광’은 관광을 통해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새로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분야임
- 이에, 충북만의 특색있는 웰니스관광 자원의 발굴 및 육성과 충북 관광산업(음식, 관광, 숙박 등)의 연계를 통해 웰니스관광 목적지로서 인지도 제고 및 관광객 유치에 필요함
- 따라서, 도 차원에서는 웰니스관광 거점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적인 기능은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사업을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하여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3년 ('19. ~ '21.)

나. 위탁사무

- ① 충북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 ② 웰니스관광 상품 및 콘텐츠 개발
- ③ 웰니스관광 전문인력 양성
- ④ 웰니스관광 상품 운영 지원
- ⑤ 웰니스관광 상품 홍보 마케팅
- ⑥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다. 소요예산('19년) : 800백만 원(국비 400, 도비 100, 시비 300)

라. 수탁기관

- 주사무소를 충청북도에 두고 관광진흥법에 의거 설립된 법인(단체)이거나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
- 정관 등에 의거 관광사업이 가능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

마. 수탁기관 선정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위·수탁 협약 체결)

바. 민간위탁 추진근거

-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 제8조(관광업무의 위탁), 제9조(대상업무)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사.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 '19. 7월

3. 관계법령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

제8조(관광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대상업무) ① 제8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북도관광안내소 설치·운영
 2.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관광박람회 참가
 3. 국내·외 관광객유치 사전답사
 4. 관광기념품 공모전
 5. 순환관광버스 운영
 6. 문화관광해설사, 관광안내원 등 관광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③ 도지사는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에 따르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5. 그밖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무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4조 제1항의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 관련성
5.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모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신청인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을 위촉할 경우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위원 수의 1/3을 넘을 수 없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심의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사업

- ❖ 웰니스관광 : 건강과 힐링(치유)을 목적으로 관광을 떠나 스파와 휴양, 뷰티(미용), 건강관리 활동 등을 행하는 것을 의미

□ 사업목적

- 충북만의 특색있는 웰니스관광 자원의 발굴 및 육성과 충북 관광산업(음식, 관광, 숙박 등)의 연계를 통해 웰니스관광 목적지로서 인지도 제고 및 관광객 유치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3년 ('19. ~ '21.)
- 사업비('19년) : 800백만 원(국비 400, 도비 100, 시비 300)
- 사업내용
 - 충북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 웰니스관광 상품 및 콘텐츠 개발
 - 웰니스관광 전문인력 양성
 - 웰니스관광 상품 운영 지원
 - 웰니스관광 상품 홍보 마케팅
 -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그간 추진상황

-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공모계획 시행(문체부) : '19. 2. 14.
- 1차 심사·선정(서류심사) : '19. 3. 21.
 - 충북(충주, 제천), 강원(강릉, 동해), 전북(고창, 남원, 순창, 진안)
- 2차 심사(PT 및 현장평가) : '19. 4. 15.
- 최종 선정 : '19. 4. 24.

□ 향후계획

- 수탁기관 공모·선정 및 사업 추진 : '19. 7월 ~